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월 일 (제373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19년 6월 24일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19. 6. 24.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주 문

- 가. 올해 충청도내 미세먼지 나쁨 ($36\sim 75\mu\text{g}/\text{m}^3$ 이상) 일수는 지난 4월 까지 55일을 기록해 작년 대비 23일 증가했으며 미세먼지 평균 농도도 전국 최고 수준임.
- 국외에서 유입되거나 도내에서 발생된 각종 유해물질과 미세먼지가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 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도의회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동 위원회는 산업, 교통, 생활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제안하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다. 위원 수는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이유

가. 최근 도내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국최고 수준이며, 4월까지 미세먼지 나쁨 ($36\sim 75\mu\text{g}/\text{m}^3$ 이상) 일수도 55일로 관측되는 등 심각한 상태로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충북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나. 도내 미세먼지를 발생 원인별로 보면, 중국 등 국외유입이 대략 40% 정도, 도내 자체 발생 및 국내 유입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도내 자체 발생의 경우 각종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소각 시설 (전국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용량의 18% 규모), 차량 배출, 공사장 비산먼지, 농업 폐기물 소각, 생활주변 등 각 분야에서 배출되고 있음.

특히 청주를 비롯한 충북지역이 분지형 인데다 유입된 미세먼지가 산맥에 가로막혀 빠져 나가지 못하고 장기간 체류하는 등 지형적인 이유도 미세먼지 악화에 한몫을 하고 있음.

다. 정부에서는 충북도내 미세먼지 심각 지역이 포함되는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저감 정책도 추진하고 있음

라. 이에 국외유입 저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촉구와 함께 자체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추진 점검, 미세먼지 배출 총량 규제, 미세먼지 배출 규제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개선 및 공감대 형성, 미세먼지 민감 계층보호를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 등을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안제시와 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마. 이런 필요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차원에서 각 분야에서 추진되는 미세먼지 대책 점검과 저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3.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충청북도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8조

참 고 자 료

○ 관계법규 발취

1. 「지방자치법」 제56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3.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8조

지방자치법

[시행 2014.1.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4.7.8.] [대통령령 제25441호, 2014.7.7., 타법개정]

-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05.24.]

- 제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 11. 12>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8. 3. 6, 2009. 7. 10, 2014. 6. 27>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3. 7. 2, 2004. 11. 12>
[중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4. 10. 31>][제7조에서 이동 <2014. 10. 31>]